

DDA 농업협상, 농업의장 평가보고서 개요

2005년 11월 22일 WTO 농업위원회 팰코너 의장은 2004년 8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최근까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개발문제 등에 관한 협상의 진전 상황을 종합 정리한 평가보고서를 배포하였다.

지난 11월 11일 농업위 비공식 특별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요약하는 수준에서 의장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였다. 의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의 핵심쟁점에 대해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예만 들어 놓음으로써 지금까지 논의된 제안서를 종합하였다.

의장은 이번 평가보고서는 전적으로 의장의 책임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회원국간 합의된 내용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회원국간의 쟁점 부분을 명확히 하여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서 회원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모델리티 수립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협상의 추진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WTO 라미 사무총장은 농업부문 이외에 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규범 등의 개별 협상그룹 의장이 작성한 평가보고서(혹은 초안)를 취합한 뒤 12월 초 WTO 일반이사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라미 사무총장의 대폭적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이를 사전에 부인한 바 있어(홍콩 각료회의의 기대수준을 적절히 조정할 것임), 12월 13일 개막될 홍콩 각료회의까지는 현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1. 시장접근분야

1.1. 구간별 관세감축

관세구간 구분시 종가세 상당치를 기준으로, 4 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는 데에는 회원국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구간별 감축방식은 선형방식을 기본으로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감축공식내 신축성 도입 여부(pivot 방식 포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구간별 감축률처럼 전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아래의 표 1은 2005년 10월 경 각 협상 그룹별 감축률 제안 내용을 정리하여 종합한 것이다.

미국, EU, 개도수출국 그룹인 G20, 수입국 그룹 G10, ACP그룹의 제안서를 총망라하여 언급된 내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구간으로 표시하였다.

표 1 그룹별 관세감축 제안 사례(선진국)

	구간경계(%)	감축률(%)
1구간	0-20/30	20-65
2구간	20/30-40/60	30-75
3구간	40/60-60/90	35-85
4구간	>60/90	42-90

주: 구간경계는 미국이 제안한 20/40/60%와 EU가 제안한 30/60/90%를 최저치와 최고치로 표시한 것임.

한편 관세상한에 대해서 G10, ACP 그룹 등 일부 회원국들은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 EU, G20은 75-100%의 관세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감품목의 수에 대해서는 전체 관세라인의 x%로 한하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커 그룹별로 1-15%까지 다양한 수치가 언급되었다.

민감품목의 대우와 관련하여, TRQ 증량시 증량 기준을 국내 소비량으로 할 것인지, 현행 수입량으로 할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TRQ 신설에는 반대하고 비TRQ 품목이 민감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이행기간을 달리 하는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1.2. 개도국 우대조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개도국들의 관세구간도 4 개로 나누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감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언급된 내용을 보면 개도국의 감축률을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도국의 민감품목에는 보다 큰 신축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관세구간 및 감축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 그룹간 의견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세구간을 20/40/60%를 기준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50/100/150%를 내세운 그룹이 있어 관세구간에 대한 그룹별 입장차

가 매우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감축률 또한 15/20/25/30%를 주장한 그룹과 25/30/35/40%를 주장한 그룹 간에는 10%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표 2 그룹별 관세감축 제안 사례(개도국)

	구간경계(%)	감축률(%)
1구간	0-20/50	15-25
2구간	20/50-40/100	20-30
3구간	40/100-60/150	25-35
4구간	>60/150	30-40

주: 구간경계는 미국이 제안한 20/40/60%와 ACP그룹이 제안한 50/100/150%를 최저치와 최고치로 표시한 것임.

개도국의 관세상한 설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그룹(G10, ACP)과 찬성하는 그룹(미국, EU, G20)으로 나뉘어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¹⁾

1.3. 특별품목

일부 그룹(G33)에서는 특별품목은 TRQ 증량 및 신설을 면제하고 자동적으로 SSM을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특별품목은 여타 품목보다 높은 수준의 신축성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은 있어야 한다는 반대에 부딪쳐,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품목의 선정에 대해 일부 그룹은 명시적인 기준에 기초한 선정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한편에서는 특별품목의 선정시 특별품목과 여타 품목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품목을 선별(filtering

1) 미국의 제안서에서는 개도국의 관세상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나 일각에서 100%가 언급되는 등 기본적으로 관세상한 설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EU와 G20은 모두 150%의 관세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d screening)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egative 방식).

또한 비록 공식적으로 제안된 적은 없으나 일부 회원국이 특별품목이 적어도 전체 세번의 2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AMS를 지급하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도 특별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SSM

회원국들 사이에서 SSM이 개도국에 중요한 장치로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물량기준 발동요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과 구제조치가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SM 발동시 기준이 되는 ‘수입급증물량’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규정된 수입급증물량 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입이 이루어질 때의 상황을 협상에서 다룰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SSM 발동 시 가격기준 발동요건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수입자유화가 많이 진행된 품목이나 관세수준이 낮은 품목, 또는 특별품목에 대해서도 SSM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이와 같은 구제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시각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1.5. 기타

선진국의 SSG 존속 여부와 개도국의 특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본골격의 열대상품 관련 문구 해석을 놓고 이를 관세 및 TRQ 증량 면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쿼터 내 관세율 감축 및 철폐, TRQ 관리방식, 경사관

세(tariff escalation)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보조분야

2.1. 무역왜곡보조 총액(Overall Cut)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0~100억 달러, 100~600억 달러, 600억 달러 이상의 3구간으로 나누어 최상위 구간(3구간)에는 EU, 차상위 구간(2구간)에는 일본·미국, 그리고 1구간에는 기타 선진국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을 최하위 구간에 배치할 것인지, 혹은 별도 구간을 마련할 것인지의 여부가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표 3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사례

	경계(달러)	감축률(%)
1 구간	0~100억	31~70
2 구간	100~600억	53~75
3 구간	600억 이상	70~80

2.2.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미국, EU는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 지급한도를 50~80% 감축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개도국의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AMS를 지급하고 있는 개도국들과 그렇지 않은 개도국들을 구분하여, AMS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개도국들은 감축을 면제하거나 AMS를 지급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최소허용보조를 선진국의 2/3수준 미만에서 감축하도록 하는 등 다른 수준의 감축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지도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2.3. 블루박스(Blue Box)

회원국들 사이에서 블루박스에 대한 추가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추가 규율방법, 신규 블루박스와 기존 블루박스에 대해 추가 규율 마련 여부 등은 협상 과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블루박스의 상한을 축소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어(농업생산액 대비 2.5~5%) 블루박스의 지급한도 상한 설정에 관해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2.4. 감축대상보조(AMS: Aggregate Measure of Supports)

AMS는 절대액을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구간경계에 대해서도 0~120/150억 달러, 120/150~250억 달러, 250억 달러 이상으로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음. 최상위 구간에는 EU가, 차상위 구간에는 미국이 배치될 것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최하위 구간에 포함되나 농업생산액 대비 AMS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데에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3대 AMS 지급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구간 배치 문제가 남아 있으며, 품목 특정 AMS 계산시 기준년도 설정 문제²⁾와 개도국 우대조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³⁾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 AMS 감축 사례

	경계(달러)	감축률(%)
1 구간	0~120/150억	37~60
2 구간	120/150~250억	60~70
3 구간	250억 이상	70~83

2) 논의과정에서 1995~2000년 혹은 1999~2001년이 제시됨.

2.5. 허용보조(Green Box)

한편 허용보조 기준 검토 및 명료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구체적인 운용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수출경쟁분야

수출경쟁분야에서는 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수출국영기업 (State Trading Enterprises: STE)의 실체, 행위, 그리고 투명성을 정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합의점 없는 상황이다.

식량원조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회원국들 간에 근본적인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량원조는 반드시 현금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상시를 위한 직접적인 식량원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들로, 이에 따라 실질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환기간이 180일 이하인 수출신용 (export credit),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 그리고 보험 프로그램 (insurance programmes)에 대한 규율에 대해 몇 가지 합의점이 도출되었으나 중요한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